《위법성조각사유》의 반동성

송 학 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리론분야에서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9권 500폐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투쟁이 더욱 첨예화되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 특히 형사법분야에서 부르죠아리론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을 정확히 밝혀내고 그에 된타격을 가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부르죠아반동들이 자본주의형법을 《국민적인 법》으로 미화분식하면서 그 《정당성》을 설교하는 법률적범주에는 《위법성조각사유》도 있다.

부르죠아반동들이 떠드는 자본주의형법에서의《위법성조각사유》에는《정당방위》와《긴 급피난》등이 있다.

부르죠아반동들은 자본주의형법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사회주의형법에서의 사회 적위험성배제사유와 대치시키면서 그것을 저들의 추악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리용하고있다.

자본주의형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와 사회주의형법에서의 사회적위험성배제사유는 같은 의미의 법률상용어인것 같지만 그것들이 추구하는 사회정치적목적과 계급적성격, 리론적기초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완전히 상반된다.

형법리론과 사법실천에서 사회적위험성배제사유와 관련한 문제는 범죄확정과 형사책임추궁의 유무를 결정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법률적문제의 하나로서 매개 나라들의 형사립법에서는 그것을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형법상제도로 규제하고 사법실천에 적용하고있다.

자본주의형법에 규제되여있는《위법성조각사유》의 반동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을 규정함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리익은 외면하면서 소수 자본가계급의 리익만을 중심에 놓고 절대화한다는데 있다.

자본주의형법에 규제되여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반동성은 첫째로, 그것이 자본주의 형법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는데 복무하는 궤변이라는데 있다.

자본주의형법리론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공동생활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륜리에 허용되는 행위》,《자아본능에 기초한 행위》로부터 흘러나온 법률용어로 정당화한다. 이러한 주장은 그 류파가 복잡한것으로 하여 나라마다 일련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목적설》,《사회륜리설》,《본능설》등으로 갈라볼수 있다.

《목적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본질을 《국가가 설정한 공동생활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며 그에 따르는 적당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로부터 출발한 사유라고 력설한다. 이 것은 결국 그 어떤 행위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범죄적행위라고 하여도 그것이 국가가 승인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위법성, 위험

성을 배제하고 범죄시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주장이다.

자본주의사회는 철두철미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자본가계급과 그것을 쥐지 못한 인민대중과의 적대되는 계급적대립과 모순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이다.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는 자본가계급과 인민대중 두 계급의 요구를 다같이 반영한 《사회공동생활목적》이란 있을수 없다. 부르죠아반동들이 제창하는 《국가가 설정한 공동생활의 목적》이란 사회공동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이 아니라 황금과 재부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끝없는 탐욕과 치부이다. 따라서 《목적설》에 기초한 자본주의형법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철저히 비현실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륜리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본질이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륜리규범의 범위안에서 허용된 행위》로부터 출발한 사유라고 하면서 그 어떤 행위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륜리의 범위안에서 응당 허용되는 행위로 될 때에는 위법성, 위험성을 배제할것을 요구하는 주장이다.

부르죠아반동들이 떠드는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륜리》란 허황한 궤변이다.

계급사회에서 법이 계급적성격을 띠는것과 마찬가지로 도덕도 철저히 계급성을 띠게 된다. 그것은 도덕도 법과 같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정한 행동준칙이기때문이다. 도덕이 계급성을 띠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르죠아계급과 인민대중에게다같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도덕이란 존재할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도덕의 계급성을 부인하고 마치도 자본주의도덕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어떤 초계급적인 도덕인것처럼 설교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자본주의사회의 륜리에 허용되는 행위로부터 출발한 사유라고 하는것은 부르죠아반동들이 저들의 반동적인 주장을 가리우기 위한 시도로밖에 되지 않는다.

《본능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본질이 《인간의 본능적인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기초 하고있기때문에 그것을 범죄시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주장이다.

본능이란 말그대로 사람이 태여날 때부터 가지고있는 성질이나 능력으로서 내외환경의 일정한 자극이나 충동에 대한 선천적이며 무조건적인 반응형식이다.

사회적위험성배제사유는 사회생활의 관계, 법률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사유이며 또 그 것은 반드시 일정한 원인과 조건에 의거하는 사회적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형법을 포 함한 모든 법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를 규제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생활과 정에 지니게 되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 즉 일정한 사회관계를 자기의 고유한 규제대상으로 하고있다.

사회가 계급으로 분화되여있고 법이 계급적성격을 띠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조각 사유의 본질을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로 묘사하려는것자체가 법의 규제대상을 모호하게 하여 자본주의형법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고 가리우려는 한갖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형법에 규제되여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반동성은 둘째로,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자본가계급의 범죄행위 를 합법화하며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된다는데 있다.

부르죠아반동들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법률에 기초한 권리의 행사》,《직무상행위》,《법 령에 기초한 행위》로부터 출발한 사유로 분식한다. 그들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위법성을 배 제하는 사유로 되기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수행한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형법전들에 그것을 규제하고있다.

현 일본형법 제35조에서는 《법령 또는 정당한 업무로 하여 하게 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이딸리아형법 제51조 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 또는 법률의 규정혹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리행은 가벌성을 배제한다.》라고 규제하고있다.

특히 미국의 《표준형법전》에서는 《중범》인 경우는 물론 《경범》인 경우에도 《특별한 정황에서 범죄자에게 중상 혹은 사망을 초래할수 있는 무력을 사용할수 있다.》라고 규제 하고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민주주의와 자유, 생 존권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2015년 5월 23일 미국 오하이오주사법당국은 2012년 11월말 흑인 2명을 쏴죽인 살 인자인 백인경찰이 무기를 사용한것은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동》이였다느 니 뭐니 하면서 뻔뻔스럽게도 그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오늘 미국에서 런이어 발생하는 흑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불법무도한 살해행위들 은 모두 미국의 인종차별정책을 합법화해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통하여 정당화되고있다.

자본주의형법과 사법실천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그들의 투쟁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부르죠아독재실현을 합법화해주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법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자본주의형법에 규제되여있는《위법성조각사유》의 반동성은 셋째로, 그것이 극단한 개 인주의를 합리화하고 고취시키는 법률적공간으로 된다는데 있다.

온갖 예속과 불평등, 대립과 갈등을 낳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애하는 개인주의는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리익을 서슴없이 침해하는 자본가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사상이며 집단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이다.

자본주의형법에 규제된 위법성조각사유가 극도의 개인주의를 사상적바탕으로 하여 그 것을 합리화하고 적극 고취시키고있다는것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주장들에서 찾 아볼수 있다.

미국, 일본, 이딸리아, 도이췰란드, 영국 등 자본주의나라들의 형법에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면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과 같은 행위들을 될수록 방위자나 피난자본인에게 국한시키면서 개인주의적관점에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정당화하고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념두에 둘 때 이것은 너무나도 례사로운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기 개인의 생명재산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것도 로골적으로 정당화하는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으로서 긴급피난에서는 일어난 손해와 입을수 있었던 손해가 같은 경우에도 긴급피난행위로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에 위험이 닥쳐왔을 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위험성을 배제하는 사유로 인정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바다에서 배가 침몰되였을 때 한사람이 1인용구명대를 쥐고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에 매달렸거나 빼앗음으로써 구명대를 쥐고있었던 사람이 죽었다던가, 적수가 자기를 저격하려는 순간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하여 옆에 서있던 사람을 방패로 희생시켜도 긴급피난으로 된다고 하는것을 실례로 들수 있다. 부르죠아반동들은 생명에 위험이 닥쳐왔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으며 또한 일어날 손해와 일어난 손해가 같은것으로 하여 그것은 위험성을 배제하는 사유로 인정되며 긴급피난으로 된다고 력설하면서 극도의 개인주의를 고취하고있다.

이처럼 자본주의형법에 규제되여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그의 사상리론적기초에 있어서나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자본주의형법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법화하고 극도의 개인주의를 고취시킨다는데 그의 반동적본질이 있다.

우리는 주체의 형법리론이 밝힌 사회적위험성배제사유의 본질을 명백히 인식한데 기초하여 자본주의형법리론에 규제되여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반동성을 철저히 폭로비판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해나가야 한다.